

●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4-86호

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09월 05일

광주전파관리소장

행정처분 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

- 1. 법적근거: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
- 2. 법령위반사항: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
- 3.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: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
- 4. 운용정지기간: 2024. 9. 27. ~ 2024. 10. 26.
- 5. 처분대상

허가번호	호출명칭 (부호)	시설자명	주소
42-2022-30-0000128	603정*호	강**	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진모길
42-2022-30-0000155	623금*호	김**	전라남도 목포시 산정원뚝길13번길
42-2015-30-0000204	600하****호	김**	전라남도 여수시 문수1길
41-2018-30-0000045	612은**호	김**	전라남도 해남군 송지면 내장길
94-2019-30-0000267	헤***2호	박**	전라남도 목포시 고하대로
41-2016-30-0000663	600대*호	이**	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상태도길
42-2016-30-0000240	617승*호	정**	전라남도 영광군 홍농읍 가마미로
42-2016-30-0000316	615수*호	조*	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중태도길
41-2016-30-0000414	600다*호	홍**	전라남도 여수시 소호1길

6. 유의사항

- 가. 귀하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.
- 나. 만약 운용정지 기간 중에도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.
 -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☎062-383-5070
 -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☎061-242-0014
 -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☎061-641-5500
- 다.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「행정기본법」 제36조(처분에 대한 이의신청)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「행정심판법」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「행정소송법」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- 라.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(☎061-330-6867)로 문의하

시기 바랍니다.